

#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칙

제 정 : 2001. 08. 01  
제1차 개정 : 2003. 06. 13  
제2차 개정 : 2003. 08. 01  
제3차 개정 : 2014. 02. 19  
제4차 개정 : 2017. 12. 28  
제5차 개정 : 2018. 08. 24  
제6차 개정 : 2018. 09. 1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 라 한다) 구성원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 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 라 함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당한 사람을 말한다.
4. “가해자” 라 함은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으로 의결된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인” 이라 함은 성희롱·성폭력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피신고인” 이라 함은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지목되어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7. “사건관련인” 이라 함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8. “2차 피해” 라 함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외국인교수 및 강사, 조교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가해자 또

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담당부서(교무처, 행정처, 성평등상담실 등)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2 장 상담 및 처리기관

**제6조(성평등상담실)** ① 총장은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진로개발센터에 성평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담실에 상담실장과 상담원을 두며, 상담실장은 상담·진로개발센터장이 겸직하며, 상담원은 성폭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사건처리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성폭력상담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원이어야 한다.

③ 상담실장은 상담원을 지휘감독하고 상담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상담
2.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
3. 피해자 요청 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중재
4.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학내 성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상담
7.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8. 성희롱·성폭력 사건 가해자상담 및 재발방지 교육

9.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제6조의2(고충상담원)**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실 상담원을 포함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상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제7조(위원회)**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수 2인, 직원 2인, 학생 2인 및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여성위원으로 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피해자가 학생인 사안에만 참석한다. 남성교수는 당연직의 임원들과 구성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과, 전공을 고려해 정한다.

④ 교직원 위원은 부총장,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실 규칙의 제정 및 개폐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중재 사항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상담실장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경우
4. 상담실 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에 유효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피해자가 학생인 사안에만 재적위원 수에 포함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 3 장 처리 및 절차

**제9조(신고 및 접수)** 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은 피해내용을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② 각 지도교수 및 학생자치기구, 노동조합 및 교직원 협의단체 등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상담실에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③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제10조(조사 및 보고)** ① 상담실장은 피해자 및 피신고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제2항의 조사 및 상담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원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⑤ 필요한 경우, 조사 또는 재조사를 위해 별도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조사단의 구성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위·직급,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상담원은 피해자 등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④ 의결기준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에 유효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피해자가 학생인 사안에만 재적위원 수에 포함한다.

**제11조의 2(재심의)** 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며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결정 및 처리)** ① 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조사·보고 및 심의·의결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지원 조치

2. (삭제)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피신고자의 공식적인 사과, 경고, 교육, 봉사, 배상의 단독 혹은 병행의 조치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

② (삭제)

③ 가해자가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별도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기타 처리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상담실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 13조(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명령 등을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4 장 보 칙

**제 14조(수당 등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15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6.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 2.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12.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8.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9. 14부터 시행한다.